서울중앙지방법원

결 정

사 건 2021카확31658 소송비용액확정

신 청 인 서울특별시

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

송달장소 :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, 6층 법무법인 율 (서 초동, 신정빌딩)

대표자 시장 권한대행 서정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김지영

피 신 청 인 한국토지주택공사

진주시 충의로 19

대표자 사장 박상우

주 문

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9636,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49763, 대법원 2020다287365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61,473,955원 임을 확정한다.

이 유

주문 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1. 4. 6.

사법보좌관 김세경





소송비용계산서

2021카확31658

신청인 : 피고 서울특별시

사건번호 : 2018가합589636,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9763, 대법원 2020다287365

제1심 소가: 1,917,510,000원, 제2심 소가: 1,917,510,000원, 제3심 소가: 1,917,510,000원

(단위 : 원)

심급	비목	비용액	비고
1심	변호사보수	20,487,55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3,400,000+(1,917,510,000-500,000,000)×0.005
소계		20,487,550	
2심	변호사보수	20,487,55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3,400,000+(1,917,510,000-500,000,000)×0.005
소계		20,487,550	
3심	변호사보수	20,487,550	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산정하면 13,400,000+(1,917,510,000-500,000,000)×0.005
소계		20,487,550	
본안비용소계		61,462,650	1심 20,487,550 + 2심 20,487,550 + 3심 20,487,550
소송비용 확정신청	인지대	900	
	송달료	10,405	기발생 5,288 + 결정정본 5,100 + 모바일단문메시지 17 (잔액은 확정 후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환급됨)
신청비용소계		11,305	
합계		61,473,955	본안비용 61,462,650 + 신청비용 11,305

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61,473,955원